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 상 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각종 위탁사무를 수탁받은 업체가 제3자에게 다시 해당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제3자 위탁으로 인한 통제력 약화를 막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탁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연 사업비 10억 이상인 사무에만 해당하는 회계감사 대상 업무를 민간위탁 전 사업으로 확대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의 책임으로 부여해 민간위탁 회계감사에 대한 시장의 책임과 관련 사무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